

제296회 정례회

2010. 12. 24(금)

심 사 보 고 서

○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7(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7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화진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보건의료 수요와 여러 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중점 추진사업

- 중점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개별사업 : 암관리, 건강검진, 전염병예방사업 등 19개 사업

○ 공공병원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1개소 : 56,412백만원
- 청주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 17,854백만원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 20,000백만원
-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 15,000백만원
-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설립 : 28,000백만원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 : 2,844백만원

○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증축 : 60개소 19,500백만원
- 보건소 등 의료장비 보강 : 25개소 1,900백만원
-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지원 : 3개소 4,500백만원

○ 보건기관 인력확보 및 능력강화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 본 계획안은 2011~2014년까지 4년간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성 있는 사업을 중점과제 및 개별 과제로 선정하고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인력확보 등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지역사회 현황조사, 기획협의팀 구성 및 중점 추진사업 도출, 중점과제 선정 및 개별계획안 작성, 주민 공고 및 공청회,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심의·확정 등의 단계를 거치는 등 계획수립 근거와 주요내용, 절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과제별 세부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목표값 설정이 다소 소극적이거나 제4기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시 반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별 계획 수립시 반영 검토 사항>

① 일부 과제의 목표치가 계획기간(4년)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

연번	과 제 명	세부 목표	쪽
1	금연사업 활동을 통한 흡연을 감소	금연클리닉 등록률 5.0% ⇒ 5.5%	150
2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로 모성과 영유아 보호	난임부부시술 지원율 78% ⇒ 81%	181
3	임산부·영유아에게 지속적인 영양플러스 지원	등록관리대상자 2,240명 ⇒ 2,300명	189
4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	장애인 등록률 6.6% ⇒ 6.9%	194
5	식품안전을 위한 공급기반 조성 추진	식품수거검사 2,950건 ⇒ 3,100건	226

② 제4기 계획의 자체평가지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 미흡

연번	과 제 명	자체평가지 도출된 개선사항	쪽
1	구강보건사업	관내 치과대학 부재로 연계사업 추진 어려움	169
2	모자보건사업	산부인과병원이 없는 시군을 위한 출산환경 대책 마련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 방향전환 필요	180

③ 충북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률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연도별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자살자수	자살률
계	12,174	24.5	12,858	25.9	15,413	30.9
서울시	2,045	20.1	2,200	21.6	2,662	26.1
부산시	919	25.5	981	27.4	1,141	32.1
대구시	568	22.8	632	25.4	730	29.3
인천시	620	23.4	724	27	843	31.2
광주시	319	22.6	305	21.5	406	28.4
대전시	355	24.1	335	22.7	461	31.1
울산시	207	18.9	242	21.9	276	24.8
경기도	2,433	22.1	2,699	24.1	3,286	28.9
강원도	563	37.4	579	38.4	658	43.6
충청북도	467	31.1	509	33.6	640	42
충청남도	734	37	711	35.4	928	45.8
전라북도	593	31.8	566	30.4	663	35.7
전라남도	484	25	516	26.8	600	31.3
경상북도	802	29.9	770	28.8	916	34.3
경상남도	926	29.1	927	28.9	1,020	31.5
제주도	139	24.9	162	28.9	183	32.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부.

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안 번호	59
----------	----

제출연월일 : 2010년 11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우리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확충,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선제적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활성화 등을 실천하고,
-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정을 기조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기간 : 2011 ~2014 (4개년)
- 주요내용
 - 가. 중점 추진사업
 - 중점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 개별사업 : 암관리, 건강검진, 전염병예방사업 등 19개 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 금연사업을 통한 흡연율 감소
 -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 활용한 건강생활 실천
 - 건강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조기 발견
 - 구강보건사업 확대로 구강질환 예방

- 암 관리사업을 통한 암발생 감소 및 적절한 치료지원
-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해 모성과 영유아 보호
- 임산부,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영양플러스 지원
-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
-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
-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결핵환자 감소
-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식품안전을 위한 공급기반 조성 추진
-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건강한 정신건강 확립
- 기타 한센인, 노인보건, 한의약, 응급의료사업 등 추진

나. 공공병원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1개소 : 56,412백만원
- 청주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 17,854백만원
-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 20,000백만원
-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 15,000백만원
-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설립 : 28,000백만원
-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 : 2,844백만원

다.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증축 : 60개소 19,500백만원
- 보건소 등 의료장비 보강 : 25개소 1,900백만원
-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지원 : 3개소 4,500백만원

라. 보건기관 인력확보 및 능력강화

3. 의안전문 : 붙임 책자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관 계 법 령 발 취

□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